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2570
----------	------

제출일자 : 2024. 11. 5.
제출자 : 달성군수



1. 폐지이유

상위법령인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 폐지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 : 「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」를 폐지함

3. 조례안 : 따로 붙임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
폐지법률(※ 붙임)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타

(1) 입법예고(2024. 9. 26. ~ 10. 16.) 결과 : 의견 없음

(2) 규제심사 : 해당사항 없음

(3) 성별영향평가 : 해당사항 없음

(4) 부패영향평가 : 특기할 사항 없음

(5) 부서합의 : 해당사항 없음

(6) 비용추계서 : 해당사항 없음

대구광역시 달성군 조례 제 호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폐지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자치분권협의회의 해산)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조례 제6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달성군 자치분권협의회는 해산한다.

관 계 법 령

- 「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」 폐지법률
(시행 2023. 7. 10.)(법률 제19430호, 2023. 6. 9. 타법폐지)